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No. 2021-					
소관부서	시행년도	행정상 조치	재 정 상 조 치		신분상 조치
			조치방법	금액(천원)	
○○○○○처 (○○○○○○○○부)	2021년	부서경고	-	-	주의

【제 목】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사업부지 전기공사 시도○○호선 신호등교차로 추가 반영 일상감사 규정 미준수

□ 업무내용 및 현황

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사업은 ○○-○○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역사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○○도 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. ○○○○처(○○○○○○○○부)에서는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사업 부지전기공사(이하 “전기공사” 라고 한다)를 계약금액 1,145,243천원에 ○○○○○(주)업체와 계약체결하고 '19.00.00.에 착공하여 '21.00.00 준공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공사개요는 [표1]과 같다. 부지조성공사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던 중 교통영향평가 4차 변경내용('20.00.00.) 사항인 시도○○호선 일부구간 도로확장을 위해서 부지조성공사 실정보고를 '20.00.00.에 방침확정(일상감사 대상아님)하고 이와 연계된 전기공사인 「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사업부지 전기공사 시도○○호선 신호등교차로 추가반영(이하 “신호등 설치공사” 라고 한다)」 실정보고 관련 시행계획보고(본부장 전결)를 '21.00.00.에 완료 및 일상감사 의뢰하고, 도로확장 부지조성공사 과정 중 신호등 설치공사를 '21.00.00.~'21.00.00.에 걸쳐 시공 완료하였다.

[표1]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사업부지 전기공사 개요

○ 본계약

- 계약업체 및 계약기간: ○○○○○(주), '19.00.00.~'21.00.00.
- 계약공사비: 도급공사비 1,145,243천원, 지급자재비 1,015,118천원
- 공사내용: ○○○○○○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도로의 안전조도 확보 및 교통신호설비 설치 및 방음터널, 맨홀펌프장, 옥외저류조 운영을 위한 전기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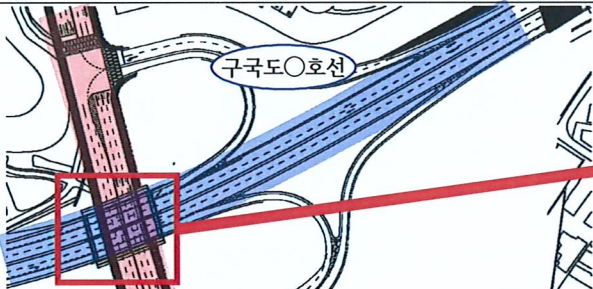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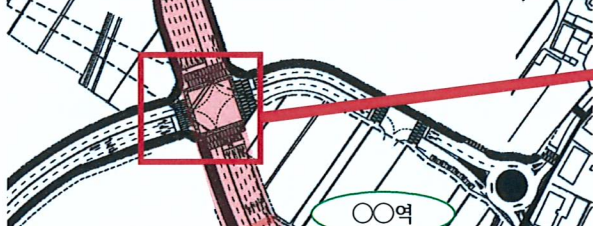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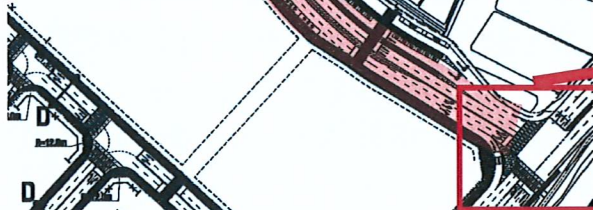
○ 추가반영(금번 일상감사)

- 추가반영 내용: 신호등 통합철주 13본 추가설치 외(구형신호등 철거 등)
- 추가반영 공사비: 도급공사비 172,880천원, 지급자재비 119,367천원

[표2] 신호등 설치공사 추진경위

- '19.00.00.: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사업부지 전기공사 착공
- '20.00.00.: 교통영향평가 4차 수리통지일(도로폭원 일부 구간 확장결정)
- '20.00.00.: 도로확장공사 실정보고 방침확정(일상감사 대상 아님)
- '21.00.00.: 신호등 설치 공사에 관한 경찰서 협의완료
- '21.00.00.: 신호등 설치 공사 실정보고 시행계획보고 완료(일상감사 대상) 및 일상감사 의뢰
- '21.00.00.: 신호등 설치공사 시행
- '21.00.00.: 신호등 관련 구간 도로포장공사 시행
- '21.00.00.: 부지조성공사 준공예정

[표3] 신호등설치 위치도

신호교차로 위치	현장 사진
	 위치 : ○○ ○○○-○
	 위치 : ○○ ○○○-○○
	 위치 : ○○ ○○○-○○○

□ 관련법령(판단기준)

公社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과 경기주택도시공사 「감사규정」에 따르면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·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고,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(이하 “집행부서”라고 한다)의 장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, 계약업무, 예산관리 업무,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.

또한, 公社 「감사규정」 제3조 제⑤항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公社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, 감사규정 시행세칙 【별표 1】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실시 최소필요기간을 고려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「감사규정시행세칙」 제8조 제②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일상감사에 회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당해 사항의 집행 전까지 일상감사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다.

그리고 公社 「공사(용역)설계변경기준」 제2장 2.1 에 따르면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설계변경사유서와 설계변경도면(대표 평면도·횡단면도 등)만 제출하여 실정보고를 시행하고 방침확정 후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과 기술검토의견서를 3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.

□ 확인된 문제

公社 「감사규정」 제3조 제⑤항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公社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그 내용을 검토 받도록 되어있고, 특히 감사규정시행세칙 【별표 1】에 따르면 7천만원 이상의 종합공사 외 공사의 실정보고 시 시행방침 결정 전 일상감사 절차를 이행하여 실정보고의 적정성,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다.

그러나, ○○○○처(○○○○○○○○부)에서 ○○○○○○○○부-○○○호('21.00.00.)

로 일상감사 의뢰한 신호등설치공사 실정보고 건에 대한 일상감사 검토결과 신호등 13본 전시공 완료된 것이 현장 확인('21.00.00.)되었다[표4].

[표4] 현장 확인사진

○○ ○○○-○	○○ ○○○-○○	○○ ○○○-○○○
		

이는 실정보고 시행방침에 따른 공사 시행 전 일상감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「감사규정」 제3조 제⑤항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며, 또한, 公社 「공사(용역)설계변경기준」 제2장 2.1 에 따라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긴급 사전방침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.

□ 관련자 의견 및 판단

담당자는 상기 공사 실정보고건의 시행계획보고(본부장 전결)를 '21.00.00.에 득하고, 같은 날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으며, 해당 공사에 대하여 긴급사유(안전사고 방지, 선제적 민원대처, 부지조성공사 일정준수)의 이유로 ○○○○○○○부 ○○○ ○○의 지시(○○○○○처 ○○○ ○○과 구두 협의)하에 '21.00.00.부터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.

그러나,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公社 「공사(용역)설계변경기준」 제2장 2.1 에 따라 긴급사전 방침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. 또한, 경찰서와 신호등 설치 공사에 대한 협의가 완료('21.00.00.)된 후 신호등 설치공사가 시작('21.00.00.)될 때까지 ○○일의 기간동안 일상감사를 완료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위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일상감사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시행한 것은 「감사규정」 제3조 제⑤항을 미준수 한 것이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○○○부 “경고” 조치

일상감사 완료전 공사를 시행하여 公社 「감사규정」에 따른 일상감사 절차를 미준수하였기에 ○○○○○○○○부에 “경고” 조치합니다.

【관련부서】: ○○○○○○○○부

○ ○○○○○○○ “주의” 조치

○○○○○○ 신호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일상감사 완료전 공사 시행은 公社 「감사규정」 미준수이며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○○○○처 ○○○ ○○(○급)을 “주의” 처분합니다.

【관 련 자】

소 속	직 위	직 급	성 명	담당기간	담당업무	현근무처	비고
○○○○○처	○○	○급	○○○	2020.0월~ 2021.0월	○○업무 총괄	○○○○○처	주의

끝.